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264 발의연월일: 2021. 11. 11.

발 의 자: 송재호 · 이상헌 · 오기형

유동수 · 이해식 · 위성곤

민형배 • 민병덕 • 남인순

이워택 • 김회재 • 김영배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종전 4개 시·군 행정체제가 2개 행정시 체제로 전환되면서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참여의 약화, 지역간 불균형,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시장의 임명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도지사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를 필수요건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 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대표성 강화와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권고안 을 기반으로 도의회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안 제11조 및 제36조 등).

법률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일반직"을 "정무직"으로, "도지사가"를 "제12조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으로 예고한 사람을 도지사가"로 하고, 같은 항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 단서에 따라 임명된 행정시장의"를 "행정시장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시장으로 임명할 사람을 예고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시장으로"를 "행정시장으로"로,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운영한다"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1조제2항 단서에"를 "제11조제2항에"로, "예고할수 있다"를 "예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지사후보자는 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을 예고한 경우에는"을 "도지사후보자는"으로, "예고한 사람의"를 "제1항에 따라 예고한 행정시장의"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제2항 단서에"를 "제11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43명"을 "46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시장 임명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제3항·제4항, 제 12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도지사선거에서 도지사후보자가 행정시장을 예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의회의원 정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행정시장) ① (생 략)	제11조(행정시장) ① (현행과 같
	승)
②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	②
시장"이라 한다)은 <u>일반직</u> 지	<u>정무직</u>
방공무원으로 보하되, <u>도지사가</u>	제12조
임명한다. <u>다만,</u> 제12조제1항에	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으로 예
따라 행정시장으로 예고한 사	고한 사람을 도지사가
람을 임명할 경우에는 정무직	<u><단서 삭제></u>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임명된	③ <u>행정시장의</u>
<u>행정시장의</u> 임기는 2년으로 하	
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행정시장으로 임명할 사람	④ <u>행정시장으로</u>
을 예고하지 아니하거나 행정	
<u>시장으로</u> 예고되거나 임명된	
사람의 사망, 사퇴, 퇴직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새로 행정시	도조례로 정하는
장을 임명하는 것이 필요한 경	바에 따라 임명한다.
우에는 <u>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u>	
임명하되,「지방공무원법」 제	
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운영한다.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행정시장의 예고 등) ①
「공직선거법」에 따른 도지사
선거(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포
함한다)의 도지사 후보자로 등
록하려는 사람(이하 "도지사후
보자"라 한다)은 <u>제11</u> 조제2항
<u>단서에</u> 따라 임명할 행정시장
을 행정시별로 각각 1명을 <u>예</u>
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후보자는 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을 예고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후보자의 등록을 신청할때에 예고한 사람의 명부와 본인승낙서를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③ • ④ (생 략)

제13조(행정시장의 퇴직) <u>제11조</u> <u>제2항 단서에</u> 따라 정무직 지 방공무원으로 행정시장에 임명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한다.

1. ~ 4. (생 략)

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① 제주특별자치도의

제12조(행정시장의 예고 등) ① -
제11조제2항
<u>에</u>
예고하여
<u>야 한다</u> .
② 도지사후보자는
<u>제1항에</u>
따라 예고한 행정시장의
<u>.</u>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조(행정시장의 퇴직) <u>제11조</u>
<u>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u>
1 4 (청체고 가이)
1. ~ 4. (현행과 같음) 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
한 특례) ①

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의 정수(제64조에 따른 교 육의원 5명을 포함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43명 이내에서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② (생략)

<u>46명</u>
② (현행과 같음)